

	<h2 style="margin: 0;">제증명발급규정</h2>	규정번호	3-4-12
		제정일자	1997.03.01
		개정일자	2018.03.01.
		개정차수	4차
		소관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의 제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식은 따로 정한다.

1. 졸업증명서(국·영문)
2. 졸업예정증명서(국·영문)
3. 수료증명서(국·영문)
4. 재학증명서(국·영문)
5. 휴학증명서(국·영문)
6. 제적증명서(국·영문)
7. 성적증명서(국·영문)
8. 교직예정증명서(국·영문)
9. 장학금수혜·비수혜증명서(국·영문)
10. 교육비 납입증명서(국문)

제3조(증명서 발급) 제2조 각호에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인터넷증명발급
2. 민원우편제도
3. 방문발급

제4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졸업예정증명서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 할 시에 발급할 수 있다.

1. 졸업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재학생
2. 필수교과목 이수 가능자
3. 졸업이수학점 충족 가능자

제5조(수수료) 증명수수료는 총장이 정한다.

제6조(기타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이 규정 제2조에 정한 증명서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타 제·증명서(응시원서 등) 및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제5조에 의한다.

제7조(발급 제한) 아래 각 호에 해당될 시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규정에 의한 발급 제한대상
2. 기타 제규정에 의한 발급 제한
3. 증명발급 자료의 전산처리 작업 등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발급 제한
4.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